

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(앵커) 초광역 성장엔진 인재육성 기본계획

2026. 6.



교 육 부

I. 추진 개요

1 추진 배경

- 교육부, 각 지방정부가 주도하여 지역 발전 전략과 연계해 대학을 지원·육성하는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(앵커, 舊 RISE) 출범(25.~)
 - 17개 지방정부는 인재양성 거버넌스를 구축하고, 블록편당 예산을 활용해 맞춤형 지역혁신 사업 기획·추진 중
- 국민주권정부, “국토공간 대전환 프로젝트” 추진으로 시·도 경계를 넘어선 산업·경제권역 단위의 지역 균형성장 필요성 제시
 - 지속 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해서는 각지의 청년이 권역 내에서 ‘대학 진학-기업 취업-정주’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 구축 필수
- 現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는 각 지방정부별 사업 추진으로 인재 양성·산학협력 등이 생활권 및 산업·경제권과 괴리되는 한계
 - ⇒ 지방정부 간 협업 촉진을 위한 초광역 단위 인재양성 모델 발굴 추진

2 추진 경과

- 「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(앵커) 추진방안」 발표: '26.4.2.(목)
- 「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(앵커) 추진방안」 설명회 개최: '26.4.13.(월)
- 2026년 전국 지자체 현장 소통 간담회 개최: '26.5.21.(목)
- 전국 지자체·대학 사업 설명회 개최: '26.6.16.(목)

3 관련 근거

- 「고등교육법」 제59조의2(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구축) 및 제59조의5(지역 간의 협업) (※ 시행일: 2026.8.11.)

II. 추진 내용

1 개요

□ (목표) 행정 경계를 허물고 **생활권, 산업·경제권**에 따라 **초광역 단위로 추진되는 산학일체형 인재양성 확대**

□ (지원대상) 초광역 단위 대학-기업 협의체

< 지원대상 협의체 구성 >

- ❖ **대학 요건:** 국가중심국립대학·사립대학(일반·전문대) 중 기관평가인증(조건부 인증 이상)을 받았으며, (사립대학)재정진단 결과 재정건전대학에 해당하는 학교
- 개별법에 따른 고등교육기관 등 기관평가인증·재정진단의 미적용 대상인 경우, 요건을 갖춘 대학과 함께 협의체 구성 시 지원 가능
- ❖ **기업 요건:** ①휴·폐업, 부도 상태가 아니며 국세·지방세 체납이 없는 기업, ②파산·회생절차 진행 중이 아닌 기업, ④기업신용 평가등급 'BB0' 이상인 기업, ⑤자본전액잠식 상태가 아닌 기업, ⑥기관 및 기관 대표자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의해 보조사업 또는 간접 보조사업 수행 대상 배제 중이거나,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교부 제한 중이 아닌 경우
- ❖ **대학 및 기업의 수는 자유롭게 구성** (대학·기업 각각 단일 또는 복수 가능)
- 복수의 대학이 참여할 경우 **과제를 총괄 관리하는 주관대학** 설정 필요
- ❖ 서로 다른 **광역지방자치단체** 내에 소재한 **대학 및 기업**으로 구성
※ 행정통합(예정) 지방정부는 통합 전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준으로 소재지 판단
- ❖ **거점국립대**는 '초광역 성장엔진 인재육성' 예산 지원이 불가하며, 필요시 주관 대학이 아닌 대학으로 협의체에 포함하되 사·도 자율 예산(국비·지방비) 통해 지원
- ❖ **해·시·도 소재 기업·연구소** 지원 시, **모델 추진 과정에서의 산학연 네트워크 활성화**를 위해 **해당 사·도 소재 대학**을 협의체에 포함 권장

□ (지원기간) 4년('26.~'29.)

□ (지원) '26년 총 800억 원

- 사업비는 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, 미선정 모델은 지방정부 수요에 따라 **자율 예산을 활용**해 추진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

< 평가등급별 지원금액(안) >

평가등급	S (2개)	A (2개)	B (2개)	미선정
지원	140~150억 원	120~140억 원	100~120억 원	컨설팅 지원

※ 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·유형별 물량·단가 변동 가능

- (신청) **복수 지방정부 간 협업을 통한 공동 계획수립·신청**이 원칙
 - 단, 협업이 현실적으로 제한되는 경우 등에 **개별 지방정부 수립·신청 예외적 허용**
- ※ 행정통합(예정) 지방정부의 신청은, 지방정부 간 협업을 통한 공동 신청으로 취급

2 추진 과제

□ 기본 방향

- **특정 산업 분야 설정 및 해당 분야의 발전**을 위한 교육·연구 등 과제 기획
 - 산업 분야의 종류·세분화* 정도에 제한은 없으나 **분야를 설정한 취지·근거** 등을 **지역의 산업·경제적 여건** 등 바탕으로 제시
 - * 예: '모빌리티 분야로 설정 또는 '완성차제조/배터리/소재부품가공' 등 세부업종 단위로 설정
- 대학이 아닌 기업 등의 **인재·기술 수요**를 우선적으로 고려
- 추진 과제는 **대학·기업에 대한 지원**을 넘어 **학생·인재의 교육·연구 및 취·창업** 등으로 연결되도록 내용 구성

□ 과제 예시 ※ 지역 전략산업 분야 육성을 위한 과제를 자유롭게 기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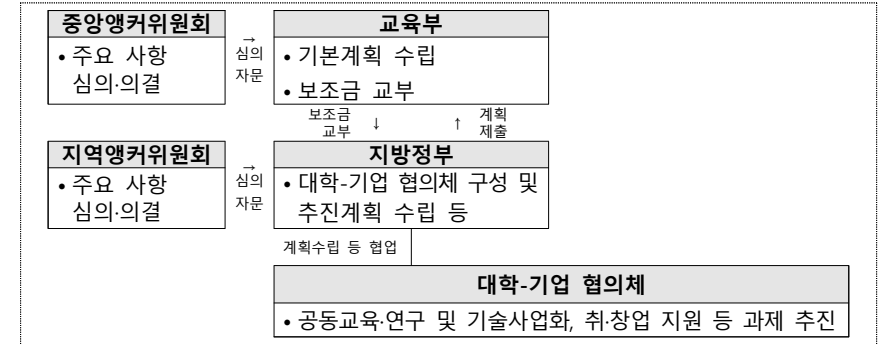
- (인재양성) 전략산업 분야의 체계적 인재 육성을 위해, **고등학교 단계부터 취업·정주까지** 이어지는 **단계별 인재양성 체계** 구축
- (취업 지원) 지역 내 **산업기반이 협소한 지역**이 **초광역 단위 기업-대학** 연계를 통해 **취업 연계 현장실습·인턴십** 등 지원
- (창업 지원) 지역별 산재된 **창업 자원***을 **교차 활용**하여 학생·교원의 창업 아이디어 구현을 지원하는 **창업 파이프라인** 구축
 - * 교육과정·실증인프라, 인적자원(교수진·VC 투자자), 재정자원(창업펀드) 등
- (기술사업화) 권역별 '**연합형 기술지주회사**'를 활용하여 **성장엔진 분야의 중·대규모 기술이전·사업화 성과** 창출

Ⅲ. 추진절차

- ① **(계획 수립)** 지방정부는 산업 분야 단위의 추진계획 수립(130억 원 기준)
 - 추진계획은 동 계획에 참여하는 지방정부의 수와 동일한 수 이내의 산업 분야에 관한 과제로 구성하고, 복수 과제의 패키지 형태로 수립
 - ※ 예: (단독 지방정부) 단일 산업 분야에 대한 과제의 패키지 형태로 계획 수립 (4개 지방정부) 최대 4개의 산업 분야에 대한 과제의 패키지 형태로 계획 수립
 - ※ 각 산업 분야가 산업 생태계 관점에서 상호 연계성을 갖도록 계획 수립 권장
 - 수립 과정에서 대학-기업 협의체 구성 기관을 구체화하고, 지방정부-대학-기업 간 수평적 관계를 바탕으로 추진 과제를 함께 기획
 - 각 지방정부는 최대 3개 이내의 계획에 참여 가능
 - ※ 최대 3개의 계획에 시·도지사 직인 첨부 (주관 지방정부인자의 여부와 무관)
 - ※ 행정통합(예정) 지방정부는 통합 전 기준 지방정부별 3개 이내 계획에 참여 가능 (계획 제출 시 통합 지방정부의 단일 명의 사용 및 단일 직인 첨부 가능)
- ② **(계획 제출)** 지방정부 간 협의를 통해 추진계획을 총괄할 주관 지방정부를 정하여, 주관 지방정부에서 대표로 계획 제출
- ③ **(평가·선정)** 교육부, 별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▲계획의 실현가능성, ▲대학-기업 협의체 구성의 적절성, ▲추진 내용의 혁신성 등 평가 실시
 - 평가는 '26년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연차점검과 병행하여 운영
 - 평가결과 통보 시 추진계획에 대한 수정·보완 의견을 함께 제시
 - 선정 기업은 협약 체결 전까지 사업 수행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협약지원금에 대한 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요
- ④ **(지방정부 사업비 교부)** 평가결과 통보 이후, 지원대상 지방정부는 평가등급, 지원금 규모에 따라 추진계획을 수정해 보조금 교부 신청
 - 추진계획 상의 지방정부별 소요예산에 따라 각 지방정부에 사업비 교부, 지방비 매칭률 산정 시 지방정부별 교부 예산액을 모수(국비)에 포함
- ⑤ **(기본계획 반영 및 사업 추진)** 초광역 성장엔진 인재육성 모델을 각 지방정부 앵커 기본계획 상 반영하여 사업 추진
 - ※ 평가·선정을 거친 후 최종 추진계획을 지역앵커위원회를 통해 심의·의결 필요

Ⅳ. 추진체계 및 기타 사항

□ 추진체계



- (교육부) 초광역 성장엔진 인재육성 기본계획 수립 등 관련 사항 총괄 보조금 교부 등
 - (전문기관) 지역 앵커센터 업무 지원, 추진모델 성과관리 및 사례 발굴·확산 등
 - (지방정부) 대학-기업 협의체 구성 및 세부 추진계획 수립·제출 등
 - (지역앵커센터) 대학 사업비 교부, 집행 관리·정산, 행·재정적 지원 등
 - ※ 5급 권역형 사업 추진 시, 전담 관리할 초광역 앵커센터 구성(설립 또는 지정) 추진
 - (대학-기업 협의체) 공동교육·연구 및 기술사업화, 취·창업 지원 등 과제 추진
- #### □ 사업비 집행
- (집행 지침) 복수 시·도에 소재한 대학이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, 교육부 지침과 그 범위 내에서 협의체가 자체 수립한 세부 기준만을 적용
 - (사업비 지원 대상) 교육부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지침에 따라 초광역 성장엔진 인재육성 모델에 참여한 기업 등에 예산(국비·지방비) 지원 가능
 - ※ 단, 국비 지원은 「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」 개정 이후('26.下 예정) 가능
 - (사업비 변경) 교육부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지침에도 불구하고, 초광역 성장엔진 인재육성 사업비는 단위과제 간 예산 변경 대상에 미포함

V. 성과관리

- **(자율성과지표 설정)** 지방정부는 협의를 통해 지역 전략산업 발전 및 산업인재 육성을 위한 **자율 성과지표**(정량) 및 **목표치**(연차별) 제시
 - ※ 교육부는 평가결과 통보 시 자율성과지표·목표치의 변경·수정을 요청할 수 있음
- **(성과평가·환류)** 매년 성과평가를 통해 협의체별 예산 차등 지원
 - 초광역 성장엔진 인재육성 과제는 **앵커 자체평가 대상에서 제외**하며, 교육부 주관 **별도 평가체계 운영** (연차점진, 중간·종합평가와 평가 시기 통일)
 - 지방정부 자율성과지표와 함께, 모델 추진 과정에서 **지방정부 간 충분한 소통·협업**이 이루어졌는지 등 **종합 평가**
- **(지방정부 자체 관리)** 각 지방정부(지역앵커센터)는 **대학-기업 협의체의 사업비 집행 등 사업 추진과정 엄정 모니터링**
 - 지방정부는 **참여기관의 부정·비리** 등이 발생한 경우, 교육부 협의 및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**지원대상 제외 등 결정**

VI. 향후 추진 일정(안)

- 초광역 성장엔진 인재육성 추진계획 제출·접수 안내: '26.6월 말
- 초광역 성장엔진 인재육성 추진계획 제출·접수: ~'26.8.3.(월)
- 초광역 성장엔진 인재육성 추진계획 평가·선정: ~'26.8.28.(금)
- 초광역 성장엔진 인재육성 사업 추진: '26. 9월~

붙임

초광역 성장엔진 인재육성사업 선정평가 기준(안)

영역	항목	
1. 사업 목표 및 추진 전략 (120)	1-1. 사업 비전, 목표, 추진 전략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	
	1-2. 지역 전략산업 선정 및 과정의 적정성	
	1-3. 지역 전략산업 인재육성 모델의 구체성	
2. 사업 추진체계 (130)	2-1. 사업 추진조직 및 관리체계 구축·운영 계획의 적정성	
	2-2. 지방정부 간 협업 및 지자체 지원계획의 적절성	
	2-3. 대학-기업 협의체 구성계획의 적정성	
	2-4. 대학-기업 협의체 운영계획 및 기관별 지원 적정성	
	2-5. 사업단장의 역량 및 위상	
3. 사업 추진 계획 (450)	① 추진과제 운영 계획 (300)	3-1. 추진과제를 통한 학생 역량 강화 방안 및 실현 가능성
		3-2. 추진과제의 참여기관간 역할 분담 및 협업체계의 적정성
		3-3. 추진과제의 산업계 수요 반영 및 산업 발전 기여 가능성
		3-4. 추진과제의 지원·관리 계획의 적정성
		3-5. 추진과제의 성과 창출 계획의 적정성
	② 연계 계획 (150)	3-6. 추진과제 간 연계 계획의 적합성 및 구체성
		3-7. 타 사업과의 연계 및 협력 계획의 적정성
		3-8. 사업추진 성과의 지속 가능 및 확산계획의 적정성
4. 성과관리계획 (200)	4-1. 성과관리 체계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	
	4-2. 성과지표 및 목표 설정의 타당성	
	4-3. 성과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 로드맵 및 계획의 적정성	
	4-4. 성과 창출, 확산 및 환류 방안의 적정성	
5. 재정투자계획 (100)	5-1. 재정투자 방향 및 계획의 적정성	
	5-2. 예산 배분 및 집행·관리계획의 적정성	
계		